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인 「주민등록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 - 동 위임 제외사무가 아닌 내용 삭제(현행 제2조제4호 삭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주민등록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우리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」中 제2조의 각 호의 조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